

학생단체활동에 관한 규정

제정 : 1997. 07. 07.

개정 : 2015. 02. 06.

개정 : 2016. 08. 05.

개정 : 2019. 01. 11.

담당 : 교학팀(950-5404)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등록요건)	제4조(등록절차)
제5조(승인)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7조(지도교수)	제8조(재정)
제9조(동아리 연합회 구성)	제10조(단체의 활동)	제11조(인쇄물 발간 및 게시 허가 신청)	제12조(단체의 자격상실)
제13조(기타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2조 1호에 규정된 학생단체(이하“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라 함은 본교 재학생으로 조직된 동호인 (동일목적추구)의 모임으로서 본교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동아리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등록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을 찬동하는 본교 재학생 10명 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질 것
2. 설립목적이 본교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3. 각 단체는 지도교수 1인을 두어야 한다.

제4조(등록절차) 단체로서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거쳐 작성하여 매 학년도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아리 등록 구비서류는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2.11.8)(개정16.08.05)

1. 동아리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16.08.05)
2. 동아리 연간활동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16.08.05)

제5조(승인) 등록신청을 마친 단체는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단체의 임원은 소속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개정 12.11.8)

- 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보선한다.(개정12.11.8)
-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원 또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16.08.05)

- ②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와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 ③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임 일자로부터 2주일 이내에 후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승낙서를 교학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①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12.11.8)

- ② 교학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체활동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동아리 연합회 구성) ① 각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동아리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연합회는 각 개별 동아리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의 회장은 동아리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12.11.8)

제10조(단체의 활동) ① 모든 활동은 지도교수가 승인한 연간사업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개정 12.11.8)(개정15.02.06)

- ② 교내외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교학팀에 제출한다. 다만, 교내활동은 교학팀에 허가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12.11.8)(개정15.02.06)
- ③ 집회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팸플릿, 티켓, 기타 유인물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제작 또는 인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쇄물 발간 및 게시 허가 신청)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개정19.01.11)

1. 인쇄물은 인쇄하기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쇄물은 배포 전에 교학팀에 제출하고,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배포 및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03.3.1)(개정16.08.05)(개정19.01.11)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안내를 받는다.

제12조(단체의 자격상실)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단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교 설립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2. 단체의 설립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
3. 1년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지도교수사임 후 사임 일로부터 2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5.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해체 결의서에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체사

유서와 지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학생팀에 제출한다.(개정12.11.8)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하되 중요사항은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개정15.02.06)

부 칙

1. 삭제(개정15.02.06)
2.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 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